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03호 2016. 11. 1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11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93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
- 정선군 공고 제2016-955호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3
- 정선군 공고 제2016-963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6-11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정선향교 및 정선 5일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확장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1-3번지 일원

다.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⑫	향교 앞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381-3번지 일원	-	증)1,343	1,343	금회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⑫	향교 앞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 = 1,343㎡	· 향교 및 정선5일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 조성된 주차장과 노후·불량 주택을 편입하여 구역 정형화를 통한 도시 경관 증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6-93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번지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고한읍사무소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6. 11. 7. ~ 2016. 11. 21.)
6.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및 고한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955호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 따라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자 하며,
-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 허가제의 허가기간 및 일반적 허가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한 운영을 도모(안 제4조 ~ 제6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특정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등을 확일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발전시설,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등 주변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명시(안 제7조 ~ 제9조)
- 개발행위 불법행위자에 대한 현장조치, 시정명령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 ~ 제12조)
-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제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 033-560-2132
- 팩스: 033-560-2596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안)

(제정) 2016. . . 예규 제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서 위임 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정선군 군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10호 이상)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실체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4.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
7. “불법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한다.

제4조(개발행위의 기간산정) ① 개발행위허가의 최초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그 사유를 인정 할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추가 1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산정 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일반토지의 절·성토) ① 절·성토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지 조성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구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④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변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물 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과 입지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9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 도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치) ① 단속공무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조사·확보하고 증인 및 현장을 가능한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속공무원은 적발한 불법행위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의 중단,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는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한 장소에 위반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고발) ① 군수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기한 내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고발을 유예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과도한 훼손을 수반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자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13조(군계획위원회 심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제 호. 2016.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예비심사서			
제명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안)		
심사항목	심사의견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		
조문별 규제여부	조문별 내용	상위법 조문내용	규제유형
	제5조(일반토지의 절·성토) ① 절·성토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지 조성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구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변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물 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제7조(토사반입 및 반출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절토나 성토가 수반되어 이동토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4.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제10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 도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없음	규제 (상위법 위임규정 없음)																		
검토사항	<table><tr><td colspan="2">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확인필요, -해당없음)</td><td>확인</td><td>비고</td></tr><tr><td rowspan="3">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td><td>·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td><td>△</td><td>-</td></tr><tr><td>·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td><td>√</td><td>-</td></tr><tr><td>·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td><td>√</td><td>-</td></tr><tr><td>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td><td>·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td><td>√</td><td>-</td></tr></table>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확인필요, -해당없음)		확인	비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	√	-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확인필요, -해당없음)		확인	비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	√	-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	√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0 293 576 663" rowspan="4"></td> <td data-bbox="579 293 1254 450"> ·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준수 여부 - 시행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 양식 등 </td> <td data-bbox="1257 293 1350 450">V</td> <td data-bbox="1353 293 1445 450">-</td> </tr> <tr> <td data-bbox="579 454 1254 521">·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td> <td data-bbox="1257 454 1350 521">△</td> <td data-bbox="1353 454 1445 521">-</td> </tr> <tr> <td data-bbox="579 526 1254 593">· 규제 제도의 절차 투명성 여부</td> <td data-bbox="1257 526 1350 593">-</td> <td data-bbox="1353 526 1445 593">-</td> </tr> <tr> <td data-bbox="579 598 1254 663">·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td> <td data-bbox="1257 598 1350 663">△</td> <td data-bbox="1353 598 1445 663">-</td> </tr> <tr> <td data-bbox="320 667 576 965" rowspan="4">규제수준의 적정성 검토</td> <td data-bbox="579 667 1254 734">· 지역·대상의 차이에 따른 고려 유무</td> <td data-bbox="1257 667 1350 734">-</td> <td data-bbox="1353 667 1445 734">-</td> </tr> <tr> <td data-bbox="579 739 1254 828">· 중복 규제 유무, 중복 시 현재시행중인 규제의 완화 방안</td> <td data-bbox="1257 739 1350 828">-</td> <td data-bbox="1353 739 1445 828">-</td> </tr> <tr> <td data-bbox="579 833 1254 900">·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td> <td data-bbox="1257 833 1350 900">○</td> <td data-bbox="1353 833 1445 900">-</td> </tr> <tr> <td data-bbox="579 904 1254 965">· 규제 집행 방식이 무리하지 않은지 여부</td> <td data-bbox="1257 904 1350 965">△</td> <td data-bbox="1353 904 1445 965">-</td> </tr> <tr> <td data-bbox="320 969 576 1346" rowspan="5">규제수준의 실효성·지속성 검토</td> <td data-bbox="579 969 1254 1037">· 타 부서, 주민, 기업, 단체 등의 반대 여부</td> <td data-bbox="1257 969 1350 1037">△</td> <td data-bbox="1353 969 1445 1037">-</td> </tr> <tr> <td data-bbox="579 1041 1254 1108">· 사회적인 제약요소와 기술수준</td> <td data-bbox="1257 1041 1350 1108">-</td> <td data-bbox="1353 1041 1445 1108">-</td> </tr> <tr> <td data-bbox="579 1113 1254 1180">·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평가</td> <td data-bbox="1257 1113 1350 1180">-</td> <td data-bbox="1353 1113 1445 1180">-</td> </tr> <tr> <td data-bbox="579 1184 1254 1252">· 결정적인 규제 회피 수단이 없는지 확인</td> <td data-bbox="1257 1184 1350 1252">△</td> <td data-bbox="1353 1184 1445 1252">-</td> </tr> <tr> <td data-bbox="579 1256 1254 1346"> · 규제 존속의 필요성 여부 - 규제일몰제 적용 필요성 여부 </td> <td data-bbox="1257 1256 1350 1346">△</td> <td data-bbox="1353 1256 1445 1346">-</td> </tr> </table>		·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준수 여부 - 시행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 양식 등	V	-	·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	-	· 규제 제도의 절차 투명성 여부	-	-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규제수준의 적정성 검토	· 지역·대상의 차이에 따른 고려 유무	-	-	· 중복 규제 유무, 중복 시 현재시행중인 규제의 완화 방안	-	-	·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	○	-	· 규제 집행 방식이 무리하지 않은지 여부	△	-	규제수준의 실효성·지속성 검토	· 타 부서, 주민, 기업, 단체 등의 반대 여부	△	-	· 사회적인 제약요소와 기술수준	-	-	·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평가	-	-	· 결정적인 규제 회피 수단이 없는지 확인	△	-	· 규제 존속의 필요성 여부 - 규제일몰제 적용 필요성 여부	△	-
	·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준수 여부 - 시행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 양식 등		V	-																																							
	·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	-																																							
	· 규제 제도의 절차 투명성 여부		-	-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규제수준의 적정성 검토	· 지역·대상의 차이에 따른 고려 유무	-	-																																								
	· 중복 규제 유무, 중복 시 현재시행중인 규제의 완화 방안	-	-																																								
	·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	○	-																																								
	· 규제 집행 방식이 무리하지 않은지 여부	△	-																																								
규제수준의 실효성·지속성 검토	· 타 부서, 주민, 기업, 단체 등의 반대 여부	△	-																																								
	· 사회적인 제약요소와 기술수준	-	-																																								
	·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평가	-	-																																								
	· 결정적인 규제 회피 수단이 없는지 확인	△	-																																								
	· 규제 존속의 필요성 여부 - 규제일몰제 적용 필요성 여부	△	-																																								
종합심사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지자체별 여건이 각기 달라 특정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토부 훈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포함한 제8조, 9조, 10조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으며, -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불합리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토록 요청한 바 있어,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9조(숙박시설 허가기준), 제10조(폐차장, 도축창, 고물상 허가기준)의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판단되며, - 특히 허가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을 요구한 조항은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조항으로 삭제가 필요함																																										
규제대상여부	☐ 비규제 ☒ 규제(☒ 심의대상 ☐ 비심의대상)																																										

정선군 공고 제2016-963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11.1.), 시행규칙 개정(2016.7.1.)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관련 차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안 제12조)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개정 권고사항 반영
-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안 별표 9부터 별표 12)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
-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안 별표 24)
 -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여 건축제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정선군청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군정소식(공고고시란 참조) 불임 정선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24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호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26 아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및 개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 및 격리병원</u>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u>격리병원</u>